

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

구분	사회적거리두기 2단계	사회적거리두기 2.5단계	연말연시 특별방역
집합금지	유흥업소 5종 (유흥주점·단란주점·감성주점· 헌팅포차·콜라텍), 홀덤펍	유흥업소 5종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접판매홍보관, 실내체육시설, 학원·교습소, 홀덤펍	실외겨울스포츠시설 (스키장·빙상장·눈썰매장) 및 부대업체 (시설내 음식점, 편의점, 스포츠용품점 등, 인근 스키대여점), 파티룸 [수도권]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
영업제한	식당·카페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직접판매홍보관, 학원, 교습소	식당·카페, 이미용업, PC방, 독서실· 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오락실· 멀티방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목욕장업, 영화관, 종합소매업(300㎡이상) 등	숙박시설

※ 기초지자체에서 2.5단계 이상을 시행한 경우에도 포함